

# 발주·계약 상담 3천건... 침체된 건설업 활성화 기폭제

##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 성료

사흘간 1만5천명 관람객 방문  
업계-발주기관 허물없는 소통  
기술개발·관로개척 기여 호평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 박람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침체된 강원도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은 기폭제였다. 개최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강원에도 홈페어는 세계 건설·건축업계의 트렌드인 '저탄소, 친환경 녹색공법'과 지자체 핵심SOC사업인 '도시재생' 등 건설업계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7면

지난 15일 개막해 17일까지 이어진 강원에도 홈페어 2019 건설·건축 박람회에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지자체, 대학 등 100여곳이 부스로 참가해 발주처와 소비자들을 만나고 서로 교류했다. 도내 유일한 건설·건축분야 박람회인 만큼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절호의 판로 개척 기회였다. 사흘간 방문 관람객은 1만 5,000명에 달했고, 각 부스에서 진행된 발주, 계약 관련 상담만 3,000여건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소통을 통한 시장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개막일인 15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10주년 기념만찬장은 박람회 참가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건설·건축 담당 공무원들도 대거 참여해 허물 없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 관로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참가업체는 자사 생신품, 보유기술에 대한 홍보를 가감없이 펼치고, 지자체 공무원은 지역별 주요 건설시책 등을 공유했다.

올해로 10년째 참가하는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는 "강원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소통의 자리가 의미 있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공공기관, 지자체 실무진이 참여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강원도 건설산업이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건설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강원에코홈페어가 발주·건설업계 상호 간 징검다리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ong@



◇춘천 북내체육관에서 17일 폐막한 강원에도 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에 많은 시민이 찾아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흘간 방문 관람객은 1만5,000명에 달했다. 신세희기자

#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성공 개최 앞장



◇강원에코홈페어 2019 박람회장에서 도 지역도시과 송삼규 과장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원에코홈페어 2019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춘천시 문화도시국 산하 건축과 직원들.

## 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도 건설교통국 산하 지역도시과는 강원에코홈페어 2019가 ‘참여와 협업’으로 성공 개최되는 데 핵심역할을 했다.

우수한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지역에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한 ‘숨은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행사를 안내하고, 이들이 박람회장에서 마케팅까지 펼치도록 단계별로 도왔다. 도 차원에서 농촌 기업이 없도록 각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며 에코홈페어를 ‘강원 건설업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도청 내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방재

과, 도시재생과와도 함께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지자체별 발주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며 관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백방으로 지원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대북공연팀 ‘태극’과 아가펠라 전문공연팀 ‘토리스’를 섭외, 지난 15일 열린 개막식 오프닝 무대를 다채롭게 꾸미는 데도 일조했다.

송삼규 도 지역도시과장은 “앞으로도 견실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참여율을 끌어올려 강원에코홈페어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중현기자 jjong@

## 춘천시 문화도시국 건축과

춘천시 문화도시국 건축과는 ‘건설업계와 소비자의 만남’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 시민들이 건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자체의 SOC,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람객 유입에 기여했다. 강원 에코홈페어 2019 개막을 앞두고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며 관람객 유치에 앞장섰다.

시민들이 레고체험을 비롯한 어린이 체험행사에서부터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대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데도 일조했다. 이 때문에 올해

는 기족단위를 포함해 어느 해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효과를 거뒀다.

참가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시청 공사 발주담당 공무원들의 박람회장 관람도 안내하며 중소기업들이 관로 개척 기회를 얻도록 도왔다. 박람회 운영사무국과 지속적인 현장 회의를 갖고 관람객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 김기수 춘천시 건축과장은 “강원에코홈페어가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는 도내 유일의 건설·건축종합박람회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대적인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중현기자

# 건축 인허가 급감, 건설업계 '개점휴업'

올 3분기 인허가 42% 줄어

착공 건축물도 36% 감소

업계 일감부족 침체 장기화

올해 3분기도내 건축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들며 건설업계가 심각한 일감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강원지역에서 인허가받은 건

축물은 3964동으로 전년 동기(4939동) 대비 975동(19.7%),연면적 기준 102만9000㎡로 전년 동기(177만5000㎡) 대비 74만6000㎡(42.0%)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에 들어간 도내 건축물은 3772동에서 3293동으로 479동(12.7%),연면적 기준 139만5000㎡에서 89만㎡로 50만5000㎡(36.2%) 줄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허가가 1년새 2240동에서 1529동으로 711동(31.7%),

80만9000㎡에서 41만㎡로 39만9000㎡(49.3%) 줄었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같은 기간 1183동에서 1064동으로 119동(10.1%),45만2000㎡에서 22만2000㎡로 23만㎡(50.9%) 감소했다.

정부의 SOC사업 축소와 더불어 민간 발주 건축물의 허가 및 착공까지 줄어들면서 건설업계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9월 강원지역 건설 수주액은 9819억9071만원

으로 전년 동기간(1조180억3040만원) 대비 360억3969만원(3.5%) 감소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강원 제1산업인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만 바라볼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 인제군 내년도 국·도비 479억원 확보

올해보다 172억1900만원 증가

인제군이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479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도비로 479억3002만원을 확보, 경제기반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정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의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올해 307억1300만원에 비해 56%(172억1900만원) 증가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특수상항지역 예산이 122억1300만원으로 갯골상하수도 설치공사와 하늘내린 인제복합커뮤니티센터 등 11개 사업, 군특(도자울편성) 예산이 108억4800만원으로 갯골자연휴양림과 서화평화체육관 건

립 등 9개 사업이 각각 포함됐다.

또,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상남문화복합센터 등 5개 사업에서 생활SOC 예산 36억8800만원, 북면·기린면 작은영화관 건립과 복합산림 경관 숲 조성·소양강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군특(이양사업) 예산 110억3500만원이 확보됐으며, 이밖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조성과 스포츠파크 물놀이 시설 확충,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의 사업 예산도 확정됐다.

이처럼 내년도 국·도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 확정 부분이 크게 증가한 데다, 지역의 미래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온 최상기 군수의 세일즈 군정이 한몫하고 있다. 진교원

# “근로기준법 보완 때 건설업 특성 반영해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업계 특성을 고려한 법안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노위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년이 넘었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에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투영한 결과물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

간협,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 배제 등 촉구

간 단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도록 하는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대상에서 배제 등을 피력했다.

우선 간협은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전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간협 관계자는 “주주간업인 건설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소급 적용할 경우 공사기간 미준수에 따른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 시행 이전 현장에 대한 특례 신설을 요구했다.

실제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제도 시행 이전의 현장은 총 20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간협은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 관계자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여기에 최근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은 지난 2월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6개월로 늘어났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견해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2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1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해외공사의 경우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기후·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 무엇보다 무조건 주52시간을 준수할 경우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협 관계자는 “해의 수주가 감소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훈기자hoony@

## 아하! 그렇구나

### ‘무등록 건설업’의 적용 범위

**Q**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배우자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C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D회사와 A는 D회사가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와 E는 위 공사 전부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는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A는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A가 D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E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에 어떠한 형사상 문제가 있을까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건설용역업”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사로 공소의 1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의 2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공사실무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향후 업무처리 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